

교원인사위원회 규정

2003. 06. 27. 전면개정

2010. 02. 01. 전면개정

2012. 08. 01. 부분개정

2014. 05. 01. 부분개정

2017. 09. 15. 부분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청운학원 정관 제48조 및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대전보건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청운학원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, 법률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당해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소집) ①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②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소속 학과의 전공 교수를 참석시킬 수 있다.

제6조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의 장이 교원을 임면 제청하고자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
2. 총장이 부총장, 실장, 처장, 단장, 원장, 관장, 센터장 보직 임면 제청 시 동의에 관한 사항
3. 기타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
4. 정관 제39조의4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

②위원회가 제1항의 임면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정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 제39조의2제1항제4호를 정관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 제39조의4제6항의 규정을 참작하여야 한다.

제7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·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<개정 2017.09.15.>

제8조(기밀유지) ①위원회 위원 및 업무관련자는 심의 및 평정사항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공식 발표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위원회 위원 및 업무관련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록) 위원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간사 등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.

제11조(시행세칙)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